

수원지방법원 2021. 4. 1 선고 2020나75965(본소), 2021나50673(반소) 판결 [점유회수의
소 · 건물인도]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1. 4. 1 선고 2020나75965(본소), 2021나50673(반소)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7. 15 선고 2020가단64630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토지

담당변호사 이지훈

피고(반소원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크로

담당변호사 제본승

변론 종결 2021. 3. 4.

판결 선고 2021. 4. 1.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7. 15. 선고 2020가단64630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3. 항소비용 및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28.14㎡ 및 4층 144.98㎡를 인도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28.14㎡ 및 4층 144.98㎡를 인도하라(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과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반소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 특약 제39조 제8항에서 '원고가 공사 완공 시 이 사건 건물 중 2, 3층을 임대하여 원고 책임하에 임대하여 잔금을 수령'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부분인 이 사건 점유부분을 공사대금 잔금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먼저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은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 함은 반소 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다20064, 20071 판결 참조).

피고는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은 이 사건 공사계약 내지 특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원고가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이 사건 점유부분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한 점유를 침탈하였음을 이유로 그 인도를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였는지에 관하여 주로 심리가 이루어졌을 뿐 이 사건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위 쟁점에 관하여서도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를 허용할 경우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원고가 반소에 부동의하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부적법하여 허용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본소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의 반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재판장판사 하현국

판사 김선영

판사김유성

별지